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윤준병·김 현·박홍배  
안호영·이춘석·박민규  
양부남·박범계·이정문  
서영석·박희승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·면·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,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또한,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전방 재난지원활동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.

그러나 이처럼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.

이로 인해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, 행정

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과 보상이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.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).

#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제4절의 제목 “하부행정기관”을 “하부행정기관 등”으로 한다.

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4조의2(통장·이장)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,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읍장·면장·동장의 업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
2.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, 민방위대 지휘, 세금 납부통지서 교부 등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봉사 등에 관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통장 및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

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장 및 이장의 임명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4조의3(통장·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 및 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발생 시 통장 및 이장의 재난지원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실비, 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절 <u>하부행정기관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절 <u>하부행정기관 등</u></p> <p>제134조의2(통장·이장) ① 행정 동의 통에는 통장을, 행정리에 는 이장을 둔다.</p> <p>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 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읍장·면장·동장의 업무 지 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, 민방위대 지 휘, 세금납부통지서 교부 등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봉사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 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제1항에 따른 통장 및 이장 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읍장·면장·</p>

<신 설>

동장이 통장 및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장 및 이장의 임명 및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4조의3(통장·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 및 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통장 및 이장의 재난지원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활동비를 지급할

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실비, 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